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학대 관련요인 비교연구*

박 미 은

(한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실태 및 학대관련 요인에 대해 비교 연구하였다. 조사결과, 첫째로 학대경험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이 일반노인보다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 심리적 학대와 방임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대발생은 두 집단 모두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신체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많았다. 둘째로 노인학대자들은 주로 40세 초반이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학대의 주요 이유는 경제문제와 성격문제로 나타났다. 셋째로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우울하고, 평소에 음주를 하며,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자가 음주상태에서 공격했거나 아동기 폭력을 경험했고, 가정 내에서 정서적인 유대감이 낮으며, 가족 원수가 적은 경우에 학대가 발생하였다.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이 아동기 학대를 경험했고,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학대자와 평소관계가 좋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가 낮은 경우에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결론에서는 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노인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학대요인

1. 서 론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크게 부부학대를 비롯하여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노인학대는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과 비교해서 가장 늦게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즉,

* 이 연구는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2001-002-C00339).

부부학대와 아동학대는 1980년대 초부터 여성단체와 일부 사회단체의 노력에 의해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에 여론화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들이 강구되어 왔지만, 노인학대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과 사회적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1999년에 실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전체 응답노인의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 및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국의 재가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총 230명을 대상으로 한 서윤(2000)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75.2%가 노인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3년 2월에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 노인 1,3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37.8%가 한차례 이상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학대받는 노인들의 수가 적지 않으며, 개인사 혹은 가정사로 취급하여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한다면 그 실태는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그 동안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문헌연구들(최해경, 1993; 김태현·한은주, 1997; 우국희, 1999, 2001)과 둘째, 노인부양자 및 일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실태와 관련 요인을 파악한 연구들(전길량·송현애, 1997, 1998; 김한곤, 1998; 이선이, 1998; 이성희·한은주, 1998)이 있다. 셋째로 60세 이상의 학대받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을 시도한 연구들(형사정책연구원, 1995; 김현수, 1997; 조애저 등, 1999; 한은주, 2000)과 넷째, 노인학대 측정도구 개발과 사회복지 차원의 원조방안을 제시한 연구들(김미혜·이선이, 1998, 이미성, 2000, 박봉길, 2000)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부부학대나 아동학대와는 달리 오랫동안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노인학대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그 심각성과 위험요인을 다양한 관점과 연구대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연구의 접근방법에서 대부분이 일반인 집단, 부양자 집단, 일반 노인집단 등과 같이 단일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제 상태나 배우자 유무, 동거가족 유무와 같은 요인에 따른 비교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각 연구마다 사용된 측정도구와 표집의 방법, 그리고 관련 변인들이 너무 다양해서 유사한 연구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거나 일반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노인학대 관련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로써 비교집단을 설정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노인과 지역사회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학대실태 및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고자 한다.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상당수의 노인이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부양자의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 중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3%를 넘고 있다. 한

편 노인학대 관련 연구에서도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학대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김한곤, 1998; 이성희·한은주, 1998; 조애저·김승권·김유경, 1999; 서운, 2000; 김신곤, 2000).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태를 노인의 개인적 특성의 하나로만 취급하고 있어 국가의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 간의 학대경험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이 일반노인(비대상 노인)과 비교해서 노인학대의 실태 및 학대관련 요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학대받는 노인이 처해 있는 다양한 조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의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학대정도과 실태는 일반노인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가?
-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을 학대하는 학대자의 특성은 일반노인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가?
-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학대관련 개인적 특성은 일반노인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가?
-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일반노인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가?

2. 문헌고찰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의 개념은 학대가 발생하는 사회적, 문화적 여건의 차이와 연구자의 관심범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노인학대의 개념과 학대유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노인학대 관련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첫째로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노인학대(domestic elder abuse)와 둘째로, 요양원 등의 노인시설에서 시설종사자에 의해 가해지는 노인학대(institutional elder abuse)와 셋째로, 노인이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기유기 혹은 자기방임(self-neglect) 등이다(Kingston and Penhale, 1995: 19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범주 가운데 첫 번째 범주인 가족구성원 혹은 부양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노인학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금까지 노인학대의 현상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에는 학대(abuse), 유기 혹은 방임(neglect), 착취(exploitation), 부당한 대우(mistreatment), 부적절한 보호(inadequate care) 등이 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는 학대, 유기, 착취 등의 사건을 언급하기 위한 일반적 용어로 사용되고, 착취

는 주로 재정적, 물질적 학대만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노인학대라는 용어와 하위범주로서의 학대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학자들은 부당한 대우라는 상위개념을 선호하고 있다. 즉 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는 학대, 유기, 방임, 착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우국희, 1999: 192).

부당한 대우(mistreatment)에 대해 존슨(Johnson, 1986:180)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불필요한 고통이 스스로 혹은 타인에 의해서 초래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고통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법적 상황으로 구분될 뿐 아니라, 적극적 혹은 의도적(active or intentional)이거나 소극적 혹은 비의도적(passive or unintentional)인 학대와 방임에서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부적절한 보호(inadequate care)와 관련하여 풀머와 오말리(Fulmer and O'malley, 1987)는 학대와 방임은 “개인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욕구란 모든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포함하는데 즉, 지지적인 관계에서부터 수용적인 생활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기회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노인학대(elder abuse)란 “노인에게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만들어 내는 부양자의 행위”이며, 노인방임(elder neglect)은 “보호에 필요한 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규정 추세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표된 몇 가지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라우와 코스버그(Lau and Kosberg, 1979)는 노인학대를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행, 재정적 학대 혹은 소유물이나 재산의 남용, 그리고 권리의 침해로 나누었다. 히키와 더글라스(Hickey and Douglass, 1981)는 수동적·능동적 방임, 언어적 혹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로 구분하였으며, 영국의 학자인 이스트만(Eastman, 1984)은 노인학대를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에 의해 계획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로서 우발적인 부상과 구별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직접적인 폭력 외에 적절히 약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식사, 난방, 오락을 제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을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정서적 학대는 위협과 모욕 등을 말하며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이해 없이 노인의 재산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쟁스톡과 화레크(Sengstock and Hwalek, 1986)는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심리적 학대, 심리적 방임, 물질적 학대, 그리고 개인적 권리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일 수 있고 자기학대나 자기방임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고드킨과 그의 동료들(Godkin et al., 1989)은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 물질적 학대, 적극적 방임과 소극적 방임으로 범주화하였다. 즉,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고통과 억압을 가하는 것으로, 심리적 학대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물질적 학대는 재산 또는 다른 자원의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이용으로 정의하였다. 적극적 방임이란 의도적으로 보살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소극적 방임이란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살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시퍼로와 그의 동료들(Shiferaw et al., 1994)은 노인학대를 학대, 착취, 방임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학대는 신체적 고통, 상처 또는 정신적 고통을 고의적으로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착취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무력한 성인이나 그의 자원을 불법적으로 또는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방임은 혼자 살거나 자기보호를 할 수 없는 무력한 성인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

는데 필요한 서비스의 결여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먼저 최해경(1993)은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성적 학대와 의료적 부적절한 처우, 방임 및 재정적 착취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은 신체적 폭력, 언어적 및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해영(1996)은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및 방임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폭력이나 상해, 음식제공, 의료처치 등의 거부, 방치, 감금, 모욕, 노인재산의 유용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양거부 및 노인유기를 포함시켰다. 조애저 등(1999)은 신체적, 언어·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으로 나누었으며, 서운(2000)은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소극적 방임과 적극적 방임(유기 포함)을 포함한 방임 및 자기방임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학대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유형은 대체적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로 나누어지고, 그 외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의 방임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성적 학대나 자기학대도 노인학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내쫓기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다른 환경에 처해지도록 강요되는 것 등의 권리침해도 포함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관련 정의들을 토대로, 노인학대의 개념을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써 자녀 및 노인을 부양하는 기타 가족원(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의 상태에 처한 경우”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그 하위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이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을 포함시키고자 한다(Tatara, 1996; Wolf, 1996). 즉, ①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란 폭력 등에 의해 신체적 상처, 고통,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어르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②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란 위협이나 모욕, 협박 혹은 다른 형태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가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욕을 하거나 고함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③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란 노인의 재산, 금전, 자원을 부양자의 이득을 위해 오용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어르신의 허락 없이 어르신이 소유한 땅이나 건물을 이전하는 등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④ 방임(neglect)이란 부양자가 자신의 의무수행을 거부했거나 실패한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보기, 보청기, 틀니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해주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2) 노인학대 관련요인 고찰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되는 노인학대의 관련요인들은 크게 노인관련 요인, 학대자 관련요인, 가정환경 관련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 관련 요인

지금까지 발표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과 관련된 특성으로 성별과 연령, 학력, 신체적, 정신

적 상태 및 경제적 의존, 사회적 관계 및 과거 학대력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연구마다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먼저, 노인학대의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있다(Talbott, 1990; Hwalek et al., 1996; 이해영, 1996; 한은주, 2000). 즉,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증가함으로써 가족의 원조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어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사는 경우가 많고 자녀와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학대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남자 노인들이 학대를 더 많이 받으며(Pillemer and Finkelhor, 1988; Pillemer and Wolf, 1989; 이성희·한은주, 1998), 성별이 노인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Lachs et al., 1997)도 있어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학력과 관련해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학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hiferaw et al., 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김미경, 1998; 한은주, 2000).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관련해서는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일수록 부양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는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학대를 유발한다고 본다(Pillemer and Finkelhor, 1988; Steinmetz, 1990; 이해영, 1996; 전길량·손현애, 1997). 일상생활능력(ADL, IADL)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에 학대가능성이 더 높다(Bennett, 1990; Lachs et al., 1997, 한은주, 2000). 또한 우울과 불안, 음주,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u and Kosberg, 1979; Rathbone-MacCuan, 1980; Wolf, 1997). 그러나 썬스톡과 바레트(Sengstock and Barrett, 1986)의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희생자 가운데 2/3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고통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를 받은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사이에는 신체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Godkin et al., 1989; Lachs et al., 1997).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학대발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성희·한은주, 1998; 서윤, 2000; 김신곤, 2000). 그러나 필머(Pillemer, 1985)는 학대받고 있는 노인 42명과 그렇지 않은 노인 42명을 비교 연구한 결과, 학대받고 있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덜 의존적이었으며, 오히려 학대자들이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노인의 경제적 의존성을 학대의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노인들이 아동기 학대경험이 있거나(Hotaling and Surrarman, 1986; Gelles and Cornell, 1990), 배우자가 없이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Lachs et al., 199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주변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Pillemer and Wolf, 1986; Lachs and Pillemer, 1995; Sodei,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에도 학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학대력과 가족형태, 사회적 지지는 노인학대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Pillemer and Sutor, 1992; Gilliland and Jimenez, 1996).

(2) 학대자 관련 요인

선행연구들을 통해 발견되는 학대자의 특성으로는 성별과 연령, 학력, 정신적 상태 및 경제적 의존,

과거 학대력 및 부양스트레스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 각 요인들은 피해노인의 특성과 비교해서 좀 더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노인 학대자들은 보통 40세에서 60세의 연령분포를 보이며, 대체로 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을 지고 있다(Milner, 1990; Paveza et al., 1992; 이선이, 1998; 이성희·한은주, 1998).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노인부양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노인학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높다(Pillemer and Suitor, 1992; Sodei, 1999).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학대하거나 (Pillemer and Finkelhor, 1988; 조애저 등, 1999),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학대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Bennett, 1990; 서운, 2000). 한편 학대자의 학력은 대체로 낮은 편으로 보고되었다(Bennett and Kingston, 1993; 한은주, 2000).

학대자의 특성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상태와 부양스트레스이다. 학대자들은 실직·실업상태에 있거나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으며(Gelles, 1974; Douglass et al., 1980; Lachs and Pillemer, 1995; 한동희, 1996; 한은주, 2000), 피해노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Bennett, 1990; Bennett and Kingston, 1993). 이와 관련하여 울프(Wolf, 1982)는 처음으로 피해자의 의존성보다는 오히려 학대자의 피해자에 대한 의존성이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에서는 피해노인의 부양자에 대한 의존성 못지않게 학대자의 심리·사회적 상태에 따른 피해노인에 대한 의존성을 학대요인으로 다루고 있다(Pillemer, 1993; Gelles, 1997; 이성희·한은주, 1998; 이선이, 1998).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손상된 노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부양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Pillemer and Finkelhor, 1988; Steinmetz, 1990; 이해영, 1996; 전길량·손현애, 1997; 이성희·한은주, 1998).

이 밖에, 학대자들은 다양한 심리적 고통이나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Rathbone-McCuan, 1980; Bennett, 1990), 정신병력이나 음주문제 혹은 약물남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Bookin and Dunkle, 1985; Pillemer and Finkelhor, 1988; Quinn and Tomita, 1997; 이해영, 1996). 또한 피해노인과 평소에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조애저 등, 1999), 과거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학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한동희, 1996; 조애저 등, 1999).

(3) 가족상황 관련 요인

기존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가족상황 관련 요인에는 노부모-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동거자녀 및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과 접촉의 빈도, 도움을 받거나 교류할 수 있는 가족원 수와 도움의 정도 등이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길량과 송현애(1997)의 연구에서는 노인이 아들과 딸 등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학대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랜드와 짐메네즈(Gilliland and Jimenez, 1996)의 연구에서는 학대받는 노인의 가족들은 낮은 수준의 애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해영(1996)은 가족관계요인을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한동희(1996)는 노인과 자녀의 관계를 학대의 위험요인으로 보았는데, 특히 만족도가 낮았던 고부간

의 과거 관계가 노인이 부양을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학대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은주(2000)의 연구에서도 노부모-자녀 사이의 관계만족도와 정서적 유대감은 학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이 낮고, 관계만족도가 낮으며, 비 동거 자녀와의 결속력이 낮을 때 노인학대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노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만족도 및 정서적 유대 혹은 결속력은 노인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학대는 자녀와의 오랜 관계에서 누적된 갈등이나 감정적 대립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Hickey and Douglass, 1981; Steinmetz, 1981; Sodei, 1999; 한동희, 1996). 또한 가족원이 노인을 부양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원이 없거나 일정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할 경우 부양에 따른 부담감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노인학대를 일으키는 잠재적 원인이 된다고 한다(Hugman, 1995). 이런 측면에서 비동거 자녀의 존재는 동거 부양자의 부양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과 도움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대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현애·전길량(1998)은 그들의 연구에서 노인들이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 접촉하는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많을수록 학대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 가족원간의 힘의 견제도 학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이해영,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노인, 학대자, 그리고 가족상황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노인관련 요인에는 성별과 연령, 학력, 신체적, 정신적 상태 및 경제적 의존, 사회적 관계 및 과거 학대력 등이 밝혀지고 있다. 학대자 관련 요인에는 성별과 연령, 학력, 정신적 상태 및 경제적 의존, 과거 학대력 및 부양스트레스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가족상황 관련 요인으로는 노부모-자녀와의 관계, 노부모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동거자녀 및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과 접촉의 빈도, 도움을 받거나 교류할 수 있는 가족원 수 및 도움의 정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노인의 학력이나 사회적 관계의 정도, 학대자의 경제상태, 그리고 가족상황요인이 대체로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그 외 요인들은 각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태이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에 대한 조사는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에게 사전 전화설명을 한 후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광주광역시에는 2002년도 10월 현재 동구 14개 동

에 21명, 서구 15개 동에 37명, 남구 15개 동에 37명, 남구 17개 동에 23명, 북구 25개 동에 75명, 광산구 18개 동에 42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89개 동을 기준으로 각 동사무소에 5부씩 할당하여 총 445부를 발송하였다. 이중 최종적으로 230부가 회수되었는데(회수율: 51.68%),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총 77,325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보면 동구 10,084명, 서구 14,898명, 남구 14,657명, 북구 24,345명, 광산구 13,341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비대상 노인)을 조사하기 위해 각 구별로 0.5%씩 배정하여 동구 50명, 서구 74명, 남구 73명, 북구 121명, 광산구 66명을 포함한 총 384명을 할당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을 조사요원으로 훈련시킨 후 지역의 노인복지관, 공원, 가정집 등을 직접 찾아 방문하여 할당된 수만큼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설문지는 총 372부였으며 12부가 미수되었다. 이중 답변이 불성실한 18부를 제외시킨 35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는 2002년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되었다.

2) 조사도구

(1) 노인학대 척도

노인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김미혜·이선이(1998)와 조애저 등(1999)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1년간에 발생한 학대경험”을 묻는 것으로, 신체적 학대 7문항, 심리적 학대 8문항, 경제적 학대 4문항, 그리고 방임 4문항을 포함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항목은 5개(전혀 없다=0, 거의 없다=1, 가끔 있다=2, 자주 있다=3, 항상 그렇다=4)이지만 최저 값이 0이므로 4점 척도라고 할 수 있다.¹⁾ 따라서 학대경험의 정도는 1점에서 92점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신체적 학대가 .8912, 심리적 학대가 .9394, 경제적 학대가 .7896, 방임이 .8710이었으며, 4가지 하위유형을 합한 전체 척도의 α 계수는 .9375로 높게 나타났다.

(2) 노인관련 요인

① 노인의 일반적 배경: 성별(남=1, 여=0)과 연령(만연령), 학력(무학, 초등 중퇴·졸업, 중 중퇴·졸업, 고 중퇴·졸업, 대학이상), 그리고 한달 평균수입 등을 알아보았다.

②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신체적 상태: 노인들이 일상생활 및 독립적인 생활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을 알아보았다. ADL은 캣츠와 아크폼(Katz and Akpom, 1987)에 의해 개발·사용된 척도이며, IADL은 로튼과 브로디(Lawton and

1)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학대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혀 없다”의 항목을 0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경험은 응답항목들의 총점이 1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Brody, 1969)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서 국내에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신체활동과 수단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DL 항목에는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등 총 6문항이 포함되었으며, IADL 항목에는 전화 걸기, 버스 타기 등 4문항이 포함되었다. 두 가지 척도 모두 5점 척도(혼자서 전혀 하지 못함=1...혼자서 매우 잘함=5)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계수는 ADL이 .9470, IADL이 .9056으로 상당히 높았다. 그 밖에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만성질환여부(예=1, 아니오=0)를 알아보았다.

③ 정신적 상태: 노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울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응(Zung, 1965)이 개발하고 이중훈(1994)이 사용한 자가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심리적 우울성향과 생리적 우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증상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53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노인의 평소 음주정도(전혀 마시지 않는다, 약간 마시는 편이다, 많이 마신다)와 과거 아동기 학대경험(있음=1, 아니오=0)을 알아보았다.

④ 사회적 관계: 노인들이 평소에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Social Support Scale)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에는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고 5점 척도이다. 그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계수는 .9678이었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일상에서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는 몇 명인지를 알아보았다.

(3) 학대자 관련 요인

① 학대자의 일반적 배경: 학대자의 성별(남=1, 여=0)과 연령(만연령), 취업여부 (취업=1, 비취업=0) 등을 알아보았다.

② 정신적 상태 및 피해노인과의 평소 관계: 학대할 때 가해자가 음주를 한 상태였는지(예=1, 아니오=0), 과거 아동기 폭력경험이 있는지의 여부(1=있음, 0=없음)를 알아보았다. 또한 평소 피해노인과는 어떤 관계였는지(아주 나쁜 편이다=1...매우 좋다=5)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4) 가족환경 관련 요인

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노인이 느끼고 있는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한은주, 2000)를 토대로 총 5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자녀들과 거리감이 느껴진다” 등과 같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된 5점 척도로서(매우 그렇다=1...전혀 그렇지 않다=5),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가 좋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709이었으며, 한은주(2000)에서는 .70이었다.

② 자녀와의 결속력 및 가족원 수: 현재 자녀와의 결속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첫째, 동거하고 있는 자녀들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1...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3)를 묻는 1문항과, 둘째, 동거하고 있지 않은 자녀들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1...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3)를 묻는 1문항, 그리고 셋째, 동거하지 않는 자녀들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매일=1...전혀 만나지 않는다=5)를 묻기 위해 각각 1문항씩 선정하였다. 또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동거 가족원의 수가 몇 명 인지를 알아보았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10.0 for Windows를 활용하여 먼저 일차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관련변인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질문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두 집단간 관련요인의 차이를 보기 위해 χ^2 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였고,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 노인(n=584)의 성별은 여성이 66.4%, 남성이 33.6%로 나타났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는 여성이 83.0%로 일반노인의 55.6%보다 많았다. 전체 평균연령은 73.65세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연령이 일반노인보다 다소 높았다. 대부분이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 혹은 중퇴였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무학 비율이 61.7%로 일반노인의 33.1%보다 높았다. 결혼상태는 사별이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배우자와의 동거비율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보다 일반노인이 더 높았다. 종교는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31.8%로 가장 많았고, 불교 20.6%, 천주교 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73.0%가 질병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일반노인의 51.7%보다 높았다. 전체 한달 평균수입은 약 20만원이었는데, 주요수입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의 경우에는 전체가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자녀가 도와주는 비율이 70.6%로 가장 높았다. 친구 수는 2.77명, 가족원 수는 2.04명이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이 친구 수와 가족원 수 모두에서 일반노인보다 적었다.

<표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	일반노인	전체
		n(%) (n=230)	n(%) (n=354)	n(%) (n=584)
성별	남성	39(17.0)	157(44.4)	196(33.6)
	여성	191(83.0)	197(55.6)	388(66.4)
학력	무학	142(61.7)	117(33.1)	259(44.3)
	초졸 혹은 중퇴	63(27.4)	174(41.2)	209(35.8)
	중졸 혹은 중퇴	15(6.5)	29(8.2)	44(7.5)
	고졸 혹은 중퇴	10(4.4)	45(12.7)	55(9.4)
	대학 이상	0(0.0)	17(4.8)	17(3.0)
결혼상태	현재 배우자와 동거	50(21.7)	167(47.2)	217(37.2)
	사별	158(68.7)	174(49.2)	332(56.8)
	이혼	14(6.1)	5(1.4)	19(3.3)
	별거	2(0.9)	8(2.2)	10(1.7)
	혼인한 적 없음	6(2.6)	0(0.0)	6(1.0)
종교	기독교	85(37.0)	101(28.5)	186(31.8)
	천주교	36(15.7)	61(17.2)	97(16.6)
	불교	40(17.3)	80(22.6)	120(20.6)
	무교	69(30.0)	112(31.7)	181(31.0)
직업여부	있음	16(7.0)	37(10.5)	53(9.1)
	없음	214(93.0)	317(89.5)	531(90.9)
만성질환 여부	있다	168(73.0)	183(51.7)	351(60.1)
	없다	62(27.0)	171(48.3)	233(39.9)
한달 주요 수입원	일을 해서 번다	0(0.0)	37(10.5)	37(6.3)
	자녀가 대준다	0(0.0)	250(70.6)	250(42.8)
	재산소득(연금 등)	0(0.0)	67(18.9)	67(11.5)
	생활보장혜택	230(100.0)	0(0.0)	230(39.4)
구 분		평균(표준편차)		
연령		74.69(6.49)	72.98(6.43)	73.65(6.50)
한달 평균수입		227,908(95611.87)	185,502(318038.90)	200,991(255551.92)
친구 수		2.10(2.38)	3.20(3.53)	2.77(3.17)
가족원 수		1.53(1.44)	2.38(2.16)	2.04(1.95)

2) 학대정도 및 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학대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서 전체적으로 학대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일반노인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1.75%가 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는 41.30%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대의 각 하위유형과 평균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학대유형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은 심리적 학대가 가장 높았고(평균 2.42), 방임(.83), 신체적 학대(.57), 경제적 학대(.50)의 순이었다. 일반노인도 마찬가지로 심리적 학대가 가장 높았으며(1.77), 방임(.53),

경제적 학대(.22), 신체적 학대(.13)의 순이었다. 따라서 두 집단간에 나타난 특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학대경험이 일반노인보다 높다는 점과, 학대유형에서는 두 집단 모두 심리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방임이 높지만, 방임 다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가,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학대가 약간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2>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학대정도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n=230)		일반노인(n=35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체적 학대	.57	2.2609	.13	.7087
심리적 학대	2.42	4.7707	1.77	4.1706
경제적 학대	.50	1.4828	.22	.8453
방임	.83	2.0803	.53	1.6233
학대 전체	1.08	2.2065	.66	1.5805
노인학대 비율	95명(41.30%)		77명(21.75%)	

*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대한 것임(거의 없음=1...항상 그렇다=4)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기존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상이점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김현수(1997)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43.8%가 학대경험이 있으며, 심리적 학대 35.0%, 경제적 학대 22.5%, 방임 18.8%, 언어적 학대 15.0%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 학대는 없었다. 한편, 고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연구한 이영숙(1997)의 연구에서는 언어적 공격이 전체응답자의 71.8%에서 나타났다. 한은주(2000)의 연구에서는 전체 노인학대 경험은 5점 만점에 평균 1.58로 중간치 이하의 점수를 보여주었으며, 하위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1.79, 신체적 학대 1.58, 재정적 학대 1.36을 나타냈다. 이렇듯 노인학대 경험비율은 각 연구마다 상이한 대상자 선정과 표집방법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41.3%, 일반노인: 21.75)와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대유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서적 학대 혹은 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의 순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노인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 경제적 방임보다 신체적 학대가 약간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차후 보다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이 생계비 이외에 개인 저축이나 연금 등에 있어 일반노인보다 여건이 좋지 않아 가족들의 기대감이 적고, 이로 인한 갈등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두 집단에서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만을 선택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77명, 일반노인 95명) 각각의 학대실태를 알아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학대빈도는 두 집단 모두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8.4%와 49.4%로 가장 높았다. 학대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두 집단에서 각각 79.2%와 81.1%로 높았으며, 정신적 피해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무력감”을 지적한 경우가 각각 45.5%와 32.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매사에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응답이 각각 23.4%와 26.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정신

적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두 집단 모두에서 70%를 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애저 등(1999)의 연구에서 신체적 증상이 없었다는 응답이 90%이상 되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무력감을 비롯한 불안과 우울 등의 정신적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76% 이상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과거 아동기 폭력경험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이 51.9%로 일반노인 37.9%보다 높았다. 외부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60% 이상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으나, 필요성을 지극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이 18.2%로 일반노인 9.5%보다 높았다.

<표 3>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학대실태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n=77) (빈도/%)	일반노인(n=95) (빈도/%)
학대 빈도	① 무응답	1(1.3)	2(2.1)
	② 거의 매일	4(5.2)	2(2.1)
	③ 일주일에 한번 이상	12(15.6)	23(24.2)
	④ 한 달에 한 두 번	38(49.4)	46(48.4)
	⑤ 일년에 한 두 번	17(22.1)	21(22.1)
	⑥ 기타	5(6.4)	1(1.1)
신체적 피해	① 무응답	1(1.3)	4(4.2)
	② 별 증상이 없었음	61(79.2)	77(81.1)
	③ 멍이 들었음	6(7.8)	2(2.1)
	④ 심한 두통으로 아팠음	7(9.1)	11(11.5)
	⑤ 기타	2(2.6)	1(1.1)
정신적 피해	① 무응답	1(1.3)	2(2.1)
	② 별 증상이 없었음	16(20.8)	25(26.3)
	③ 자신에 대한 실망감, 무력감	35(45.5)	31(32.6)
	④ 본인이 죽을 것 같은 생각	3(3.9)	4(4.2)
	⑤ 매사에 불안, 우울	18(23.4)	25(26.3)
	⑥ 사람 만나는 것 기피	4(5.1)	6(6.4)
	⑦ 기타	0(0.0)	2(2.1)
노인폭력 경험	① 무응답	1(1.3)	5(5.3)
	② 아니오	36(46.8)	54(56.8)
	③ 예	40(51.9)	36(37.9)
도움 필요성	① 무응답	1(1.3)	7(7.3)
	② 외부도움 필요 없다	47(61.0)	58(61.1)
	③ 외부도움 필요하다	14(18.2)	9(9.5)
	④ 잘 모르겠다	15(19.5)	21(22.1)

3) 노인학대자의 특성

먼저, 노인학대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학대자의 연령은 두 집단 모두 4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으며, 성별은 두 집단 모두 남성이 약간 많았다. 학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학대자에서 중졸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노인의 학대자 경우에는 고졸이 가장 높았다. 즉, 고졸이

상의 학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학대자가 40.3%, 일반노인의 학대자가 66.3%였다. 결혼상태는 두 집단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학대자가 49.4%이고 일반노인의 학대자는 69.5%로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났다. 한편 미혼의 비율은 두 집단 모두에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 각각 23.4%와 17.9%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두 집단 모두 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취업여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학대자의 경우 67.5%, 일반노인 학대자의 경우 48.4%가 직업이 없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학대자들은 일반노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학력이 낮고, 미혼(혹은 배우자 없음)과 이혼의 비율이 다소 높으며, 직업이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 노인학대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 학대자	일반노인 학대자
		n(%) (n=77)	n(%) (n=95)
성별	무응답	1(1.3)	2(2.1)
	남성	43(55.8)	51(53.7)
	여성	33(42.9)	42(44.2)
학력	무응답	1(1.3)	4(4.2)
	무학	2(2.5)	1(1.1)
	초졸 혹은 중퇴	10(13.0)	4(4.2)
	중졸 혹은 중퇴	33(42.9)	23(24.2)
	고졸 혹은 중퇴	27(35.1)	47(49.5)
	대학 이상	4(5.2)	16(16.8)
결혼상태	무응답	1(1.3)	2(2.1)
	배우자 있음	38(49.4)	66(69.5)
	사별	7(9.1)	4(4.2)
	이혼	10(13.0)	4(4.2)
	별거	3(3.8)	2(2.1)
	미혼	18(23.4)	17(17.9)
종교	무응답	1(1.3)	3(3.2)
	기독교	12(15.6)	15(15.8)
	천주교	2(2.6)	7(7.3)
	불교	9(11.7)	15(15.8)
	무교	53(68.8)	55(57.9)
취업여부	무응답	1(1.3)	2(2.1)
	있음	24(31.2)	47(49.5)
	없음	52(67.5)	46(48.4)
연령 (평균/표준편차)		42.35년(10.93)	40.60년(12.16)
합계		77(100.0)	95(100.0)

다음으로 노인학대자의 학대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노인과의 관계는 두 집단 모두 장남(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24.7%, 일반노인: 31.6%), 만며느리(22.1%, 28.4%), 차남이하(20.8%, 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조애저 등(1999)에서는 며느리

44.7%, 아들 42.6%로 며느리가 약간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운(2000)의 연구에서는 아들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 딸이 학대한다는 비율도 13.0%로서 일반노인의 6.3% 보다 많았다. 학대이유에 대해서는 무응답이 두 집단에서 각각 48.1%와 53.7%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그 외에는 경제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각각 27.3%, 23.2%로 응답자중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성격문제가 16.9%, 12.6%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자의 경제문제 때문에 학대가 발생한다는 연구들(한동희, 1996; 조애저 등, 1999; 한은주, 2000)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학대 시 음주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70%이상이 관련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학대자 경우에는 26.0%가 음주상태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반노인의 17.9% 보다 높았다. 아동기 과거력과 관련하여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2.1%, 35.1%로 나타났다.

<표 5> 노인학대자의 학대관련 특성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 (n=77) (빈도/%)	일반노인 (n=95) (빈도/%)
피해노인과 관계	① 무응답	1(1.3)	2(2.1)
	② 장남	19(24.7)	30(31.6)
	③ 차남이하	16(20.8)	18(18.9)
	④ 맏며느리	17(22.1)	27(28.4)
	⑤ 둘째 이하 며느리	5(6.5)	6(6.3)
	⑥ 딸	10(13.0)	6(6.3)
	⑦ 사위	1(1.3)	1(1.1)
	⑧ 손자손녀	6(7.8)	5(5.3)
	⑨ 기타(동생, 조카 등)	2(2.5)	0(0.0)
학대 이유	① 무응답	37(48.1)	51(53.7)
	② 성격문제	13(16.9)	12(12.6)
	③ 술	3(3.9)	4(4.2)
	④ 경제문제	21(27.3)	22(23.2)
	⑤ 기타	3(3.8)	6(6.3)
학대시 음주여부	① 무응답	1(1.3)	3(3.2)
	② 아니오	56(72.7)	75(78.9)
	③ 예	20(26.0)	17(17.9)
학대자 폭력경험	① 무응답	1(1.3)	3(3.2)
	② 아니오	26(33.8)	43(45.3)
	③ 예	27(35.1)	21(22.1)
	④ 잘 모르겠음	23(29.8)	28(29.4)

4) 조사대상 노인의 학대관련 개인특성 비교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비교 분석하기에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

의 개인적 특성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소음주와 과거 학대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즉, 성별과 연령, 학력, 한달 평균수입, ADL, IADL, 만성질환여부, 우울, 사회적지지, 친구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6>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학대관련 개인특성 비교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n=230)	일반노인 (n=354)	$\chi^2 \cdot t$ 값
성별	여성	191(83.0)	197(55.6)	26.498***
	남성	39(17.0)	157(44.4)	
연령		74.69(6.49)	72.98(6.43)	3.136**
학력	중졸이하	220(95.7)	292(82.5)	22.360***
	고졸이상	10(4.3)	62(17.5)	
한달 평균수입		227908.70(95611.87)	183502.82(318038.90)	2.461*
ADL(일상생활능력)		22.2739(5.8488)	25.0085(5.3019)	-5.846***
IADL(수단적 일상생활능력)		14.3174(4.0906)	16.2599(3.7470)	-5.903***
만성질환여부	없음	62(27.0)	171(48.3)	26.498***
	있음	168(73.0)	183(51.7)	
우울		41.3217(5.5784)	37.4379(7.7341)	1.598**
평소음주	비음주	51(65.4)	58(53.7)	2.547
	음주	27(34.6)	50(46.3)	
과거학대력	없음	40(51.3)	42(39.6)	2.473
	있음	38(48.7)	64(60.4)	
사회적 지지		70.9783(17.0346)	79.6299(16.1054)	-6.200***
친구 수		2.10(2.38)	3.20(3.53)	-4.153***

* p<0.05 ** p<0.01 ***p<0.001

먼저 성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83.0%로 일반노인의 55.6%보다 높았으며, 남성의 비율은 반대로 일반노인이 더 높았다. 연령에서는 두 집단이 평균 74.69세, 72.98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연령이 다소 높았으며, 학력에서는 중졸이하가 각각 95.7%, 82.5%로 일반노인의 학력이 다소 높았다. 한달 평균수입은 두 집단이 각각 227,908원과 183,502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서 수입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앞서 <표 1>의 기술적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노인은 직계가족을 포함한 부양자로부터 용돈을 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생계비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ADL과 IADL은 모두 일반노인이 높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73.0%인 반면, 일반노인은 51.7%로 나타났다. 우울한 감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가 높았으나, 사회적 지지와 친구 수는 일반노인이 더 높았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은 일반노인과 비교해서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이 다소 높으며, 학력이 낮고, 한달 수입이 다소 많았다. 그리고 일상생활능력이 낮았으며, 만성질환을 더 많이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우울이 높고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떨어지

며 친구수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5)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요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학대 관련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학대경험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세 가지 학대관련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회귀분석 모델의 F값의 유의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전체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그리고 일반노인 모두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모델의 설명력은 전체 노인이 36.4%,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이 54.3%, 그리고 일반노인이 40.4%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학대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관련 영향요인에서, 첫째로 전체노인을 살펴보면 노인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 학대자의 성별 및 학대 시 음주, 피해노인과의 평소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등 6가지 요인이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우울을 포함한 정신적 어려움이 있고(Lau and Kosberg, 1979; Rathbone-MacCuan, 1980; Wolf, 1997) 주변의 지지가 부족한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다는 연구들(Pillemer and Wolf, 1986; Lachs and Pillemer, 1995; Sodei,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을 포함한 부양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학대를 많이 하고(Bennett, 1990; 서운, 2000) 학대 시 음주를 한다는 연구결과(Bookin and Dunkle, 1985; Pillemer and Finkelhor, 1988; Quinn and Tomita, 1997; 이해영, 1996)와 유사하며, 평소 피해노인과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들(Gilliland and Jimenez, 1996; 한동희, 1996; 송현애·전길량, 1998; 한은주, 2000)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둘째로 두 집단의 전반적인 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 자신의 우울, 평소음주, 사회적 지지와 학대자의 학대 시 음주, 과거 아동기 폭력경험, 그리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및 가족원의 수 등 7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이 우울하며, 평소에 음주를 하고,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자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노인을 공격했거나 과거 아동기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가족 내 자녀들과 정서적인 유대가 낮으며, 가족원수가 적은 경우에 학대가 유발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의 과거 아동기 학대경험과 사회적지지, 피해노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등 4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일반노인의 경우 과거 아동기에 학대경험이 있고,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학대자와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가 낮은 경우에 학대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전체 학대노인의 영향요인과 다른 요인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학대자의 성별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서는 노인의 평소음주와 학대자의 과거 아동기 학대 경험, 그리고 가족원 수가 추가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의 과거 아동기 학대경험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요인들은 음주습관이 있는 노인과(Wolf,

1997), 과거 아동기 학대경험이 있는 학대자(한동희, 1996; 조애서 등, 1999), 그리고 피해노인이 함께 동거하는 가족원 수가 적은 경우(이선이, 1998)에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존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표 7>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구분		전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일반노인	
		B	Beta	B	Beta	B	Beta
노인 관련요인	성별(1=남성)	-2.590	-.109	-.566	-.019	-2.238	-.116
	연령	-.125	-.082	4.355E-02	.025	-.140	-.107
	학력	-.526	-.050	-.791	-.055	-.412	-.050
	한달 평균수입	-9.4E-07	-.269	2.586E-06	.025	3.735E-07	.011
	ADL	-3.022E-02	-.017	-.441	-.159	-9.1E-02	-.041
	IADL	-.251	-.102	-2.463E-02	-.014	-2.6E-02	-.015
	만성질환여부(1=있음)	-1.481	-1.006	.268	.012	-3.011	-1.542
	우울	.259	.160*	.282	.164*	.155	.112
	평소음주	1.853	1.362	4.063	.197*	.896	.054
	아동기 학대경험(1=있음)	2.128	.106	-.901	-.041	4.831	.267*
	사회적 지지	-.111	-2.108*	-1.6E-02	-.024*	-.167	-.292*
	친구 수	-.125	-.319	-1.137	-.196	.120	.029
학대자 관련요인	성별(1=남성)	4.275	.212*	.991	.045	4.002	.225
	연령	5.999E-02	.062	1.918E-03	.002	3.933E-02	.048
	취업여부(1=취업)	-8.2E-02	-.004	-2.238	-.094	2.171	.122
	학대시 음주(1=음주)	6.310	.259**	15.027	.600***	3.506	.151
	아동기 학대경험(1=있음)	1.500	.125	4.183	.304*	-.510	-.050
	피해자와의 평소관계	-2.333	-.163*	-.276	-.019	-3.566	-.268*
가족상황 관련요인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287	-.238**	-.454	-.336**	-.202	-.190*
	동거 자녀 도움정도	1.086	.117	3.637	.248	-.467	-.064
	비동거 자녀 도움정도	-.112	-.009	.259	.018	-.856	-.723
	비동거 자녀 만남정도	.396	.053	1.107	.146	.758	.102
	가족원 수	-.912	-.180	-1.801	-.270*	.198	.048
* p<0.05 ** p<0.01 ***p<0.001		R ² =.364 (F: 3.531, p=.000)		R ² =.543 (F: 2.687, p=.002)		R ² =.404 (F: 1.943, p=.019)	

셋째, 세 가지 관련요인(노인, 학대자, 가족)별로 두 집단간에 나타난 차이와 이를 통한 개입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노인관련 요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 노인의 우울과 평소 음주,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일반 노인에서는 과거아동기 학대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대에 미치는 노인의 특성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관련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는 평소 우울 수준과 음

주습관을 변화시키는 노력과,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이동기 학대경험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두 집단 모두 주변의 다양한 도움을 확대함으로써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학대자 관련요인의 영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 학대자의 학대 시 음주와 과거 아동기 학대경험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피해노인과의 평소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 음주문제가 노인관련 요인 뿐 아니라 학대자 관련요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피해노인 뿐 아니라 노인을 학대하는 가족이나 부양자에 대한 음주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학대자에 대해서도 과거 아동기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주는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노인의 경우에 전체 노인과 마찬가지로 평소 학대자가 피해노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끝으로 가족관련 요인의 영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 학대받은 전체노인과 마찬가지로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원 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유대감이 약하고, 가족원의 수가 적은 경우에 학대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비 동거자녀의 결속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거하지 않는 자녀와 접촉하는 양이 많을수록 학대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송현애·전길량, 1998)와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평소에 자녀들과 정서적 관계가 좋지 않거나 갈등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위한 개입이 요청되며,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가족원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지원이나 자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노인의 경우에 유일하게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마찬가지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학대발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실태 및 학대관련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학대 관련요인들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노인 요인(성별, 연령, 학력, 한달 평균수입, ADL, IADL, 만성질환여부, 우울, 평소음주, 과거아동기 학대경험, 사회적지지, 친구 수)과 학대자 요인(성별, 연령, 취업여부, 학대 시 음주, 과거 아동기 학대경험, 피해노인과의 평소관계), 그리고 가족상황 요인(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동거자녀의 도움정도, 비동거자녀의 도움정도 및 만남 정도, 가족원 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정도와 실태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서 전체적으로 학대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노인은 21.75%가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는 41.30%였다. 학대의 하위유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 심리적 학대, 방임,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노인은 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의 순이었다. 즉, 두 집단 모두 심리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방임이 차지했으나, 방

임 다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가,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학대가 약간 더 높았다. 또한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77명, 일반노인 95명)의 학대 실태를 알아본 결과, 학대빈도는 두 집단 모두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대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신체적 피해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나, 정신적 피해는 두 집단 모두 70% 이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기 폭력경험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이 약간 높았으며, 외부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이 일반노인보다 높았다.

둘째, 노인학대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대자의 연령은 두 집단 모두 40대 초반이고 남성이 약간 많았다. 학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학대자의 경우 중졸이 많은 반면 일반 노인학대자의 경우 고졸이 많았다. 결혼상태는 두 집단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약간 많았다. 종교는 두 집단 모두 무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여부와 관련해서는 미취업 상태가 높게 나타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학대자의 경우에서 더 높았다. 한편, 노인학대자의 학대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피해노인과의 관계는 두 집단 모두 장남, 딸며느리, 차남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이유에 대해서는 무응답 비율이 높긴 했으나, 경제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성격문제를 지적하였다. 학대 시 음주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음주상태였다고 보고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학대자의 비율이 일반노인학대자보다 높았다. 아동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두 집단 모두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학대관련 개인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평소음주와 과거 학대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별과 연령, 학력, 한 달 평균수입, ADL, IADL, 만성질환여부, 우울, 사회적지지, 친구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은 일반노인들 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으며 학력이 낮았다. 또한 한 달 평균수입에 있어서는 일반노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노인의 경우 부양자로부터 용돈을 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70.6%) 실제적인 생활비가 적은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생계비를 제공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ADL과 IADL의 수준에서는 일반노인보다 낮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 우울 증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낮았으며, 친구 수에서도 적게 나타났다.

넷째,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노인의 경우에 노인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 학대자의 성별 및 학대 시 음주, 피해노인과의 평소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등 6가지 요인이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 자신의 우울, 평소음주, 사회적 지지와 학대자의 학대 시 음주, 과거 아동기 폭력경험, 그리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및 가족원의 수 등 7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 하며, 평소에 음주를 하고,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자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노인을 공격했거나 과거 아동기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가정 안에서는 자녀 혹은 부양자와 정서적인 유대가 낮으며, 가족원수가 적은 경우에 학대가 발생되었다. 한편,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의 과거 아동기 학대경험과 사회적지지, 피해노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등 4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 아동기에 학대경

힘이 있고,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학대자와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가 낮은 경우에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관련요인의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학대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관련 요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 우울과 평소음주,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그리고 일반 노인에서는 과거아동기 학대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에 미치는 노인의 특성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대에 미치는 노인관련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는 평소 우울 수준을 낮추고 음주습관을 변화시키는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우울과 음주문제는 일반노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위험요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학대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아동기 학대경험을 다루어 주는 전문상담이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두 집단 모두에게 주변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등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대를 통해서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대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계획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학대자의 경우 학대 시 음주상태였고 과거 아동기 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피해노인과 평소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학대자의 경우에는 피해노인과 마찬가지로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해서 음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와 더불어 과거 아동기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듯,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학대자들에게서 나타난 학대 시 음주상태와 과거 아동기 폭력경험은 일반 노인학대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위험요인으로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일반 노인학대자 경우 평소 피해노인과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학대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대의 상태에서 나타난 비와 같이, 대부분의 학대가 심리적 학대 및 방임에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대로 인한 피해가 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노인에 대한 상담 뿐 아니라 학대자의 왜곡된 성격과 자신의 가족문제, 과거 아동기 학대경험, 음주, 그리고 비신체적 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학대가정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하여 개입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원 수가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유대감이 약하고, 가족원의 수가 적은 경우에 학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평소에 자녀 혹은 부양자와 정서적 관계가 좋지 않거나 가족갈등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는 그들과의 정서적 관계를 개선할 수 위한 개입이 요청되며,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가족원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개발과 연결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노인과 비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 가족원수가 적은 것이 사회적 지지의 부족과 더불어 학대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일반노인의 경우에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마찬가지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은 학대발생 후의 소극적 개입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예방노력이 필요하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학대관련 요인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 개입과 더불어, 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노인복지관 및 재가봉사센터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대 위험성이 높은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학대상담센터를 비롯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우울과 음주 뿐 아니라 평소 만성질환이 있거나 일상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존성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활력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여가프로그램의 기회도 노인복지체계를 통해서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학대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학대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노인 부양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와 관련한 비교연구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학대관련 요인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선행연구를 기초로 학대관련 요인들을 노인, 학대자, 가족상황 요인으로 나누어 설정하였으나 실제 연구대상 노인의 학대에 미치는 변인들을 충분히 포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노인학대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적 태도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화적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와 더불어 노인학대 현상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 및 측정도구의 개발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방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란 점도 지적해 둔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은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탐색과 측정방법의 개발 등을 통해서 계속 보완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미경. 1998.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 · 이선희. 1998. “노인학대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일 연구”. (계간) 사회복지, 136: 87-110.
- 김신근. 2000. “노인학대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서울시 일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 · 한은주. 1997.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한국노년학, 17(1): 51-73.
- 김한근. 1998.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84-197.
- 김현수. 1997.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봉길. 2000. “노인학대 인식도 분석을 통한 사회사업 원조전략”.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운. 2000.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 27-71.

- 우국희. 1999. "노인학대에 개념정립을 위한 비판적 고찰". *상황과 복지*, 6: 183-212.
- _____. 2001. "노인학대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일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44: 209-231.
- 이미성. 2000.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방법".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이. 1998.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희·한은주. 1998.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요인". *한국노년학*, 18(3): 123-141.
- 이영숙. 1997.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359-372.
- 이중훈. 1994. "급성 및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의 우울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해영. 1996.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고찰: 외국의 노인복지 관련법". *노인복지정책 연구*, 3: 299-328.
- 조애저·김승권·김유경. 1999.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길량·송현애. 1997.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83-94.
- _____. 1998.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II". *대한가정학회지*, 36(3): 145-159.
- 최해경. 1993.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 논문집*, 22: 273-28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 한동희. 1996.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은주. 2000. "노인학대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ennett, G. 1990. "Shifting Emphasis from Abused to Abuser." *Geriatric Medicine* (April): 37-49.
- Bennett, G., and Paul Kingston. 1993. *Elder Abuse: Concepts, Theories and Interventions*. London: Chapman & Hall.
- Bookin, D., and R. E. Dunkle. 1985. "Elder Abuse: Issues for the Practitioner" *Social Casework* 66(1): 3-12.
- Douglass, R. L., T. Hickey, and C. Noel. 1980. *A Study of Maltreatment of Elderly and Other Vulnerable Adults*. Ann Arbor: Institute of Gerontology, Uni. of Michigan.
- Eastman, M. 1984. *Old Age Abuse*. London: Age Concern England.
- Fulmer, T., and T. O'Mally. 1987. *Inadequate Care of the Elderly: A Health Care Perspective on Abuse and Neglect*. New York: Springer.
- Gelles, R. 1974. *the Violent Home*. Beverly Hills: Sage Pub.
- Gelles, R., and C. P. Cornell. 1990.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Gelles, R. 1997.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3rd ed.). Sage Pub.
- Gilliland, N., and S. R. Jimenez. 1996. "Elder Abuse in Developed and Developing Societies: the US and Costa Rica." *Journal of Developing Societies* 12(1): 88-103.
- Godkin, M. A., R. S. Wolf, and K. A. Pillemer. 1989. "A Case Comparison Analysis of Elder Abuse and Neglec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8(3).
- Hwalek, M. A., A. V. Neal, C. S. Goodrich and K. Quinn. 1996. "the Association of Elder Abuse and Substance Abuse in the Illinois Elder Abuse System." *The Gerontologist* 36(5): 694-700.
- Hickey, T., and R. L. Douglass. 1981. "Mistreatment of the Elderly in the Domestic Setting: An Exploratory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1(5): 500-7.
- Hotaling, G. T., and D. B. Sugarman. 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2): 101-124.

- Hugman, R. 1995. "the Implications of the Term 'Elder Abuse' for Problem Definition and Response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24(4): 493-507.
- Johnson, T. F. 1986. "Critical Issues in the Definition of Elder Mistreatment." in K. Pillemer, and R. Wolf(eds), *Elder Abuse: Conflict in the Family*. Dover: Auburn House.
- Katz, S. and C. Akpom. 1987. "12 Index of ADL." *Medical Care* 14(5): 116-8.
- Kingston, Paul, and Bridget Penhale. 1995. *Family Violence and the Caring Professions*. London: Macmillan Press LTD.
- Lachs, M. S., and Pillemer, K. 1995. "Abuse and Neglect of Elderly Person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2(7): 437-443.
- Lachs, M. S., C. Williams, S. O'Brien, L. Hurst, and R. Horwitz. 1997. "Risk Factors for Reported Elder Abuse and Neglect: A Nine-year Observational Cohort Study." *The Gerontologist* 37(4): 469-474.
- Lau, E. E., and J. I. Kosberg. 1979. Abuse of the Elderly by Informal Care Providers. *Aging* 299: 10-15.
- Lawton, M. P. and E. Brody. 1969. "Assessment of Older People: Self Maintaining and 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Living." *The Gerontologist* 9: 179-183.
- Milner, J. S. 1990. "Elder Abuse and Neglect." (pp.316-332) in *Gerontology: Perspectives and Issues*. edited by K. F. Kerraro. New York: Springer Pub.
- Paveza, G. J., D. Cohen, C. Eisdorfer, S. Freels, T. S. Pharm, J. W. Ashford, P. Gorelick, R. Hirschman, D. Luchins, and P. Levy. 1992. "Severe Family Violence and Alzheimer's Diseas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The Gerontologist* 32(4): 493-497.
- Pillemer, K. 1985. "the Dangers of Dependency: New Findings on Domestic Violence Against the Elderl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Pillemer, K. 1993. "the Abused Offspring are Dependent: Abuse is Caused by the Deviance and Dependence of Abusive Caregivers." in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edited R. J. Gelles, and D. R. Loseke. London: Sage.
- Pillemer, K., and D. Finkelhor. 1988.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 Random Sample Survey." *The Gerontologist* 28(5): 51-57.
- Pillemer, K. and R. S. Wolf. 1986. *Elder Abuse: Conflict in the Family*. Dover MA: Auburn House.
- Pillemer, K. and R. S. Wolf. 1989. *Helping Elderly Victims: the Reality of Elder Abus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Pillemer, K. and J. Suito. 1992. "Violence and Violent Feelings: What Causes Them Among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47, S 165-S 172.
- Quinn, Mary Joy, and Susan K. Tomita. 1997. *Elder Abuse and Neglect: Causes, Diagnosis, and Intervention Strategies*(2nd edition). New York:Springer Publishing Co.
- Rathbone-McCuan, E. 1980. "Elderly Victims of Family Violence and Neglect" *Social Casework* 61(5): 296-304.
- Sengstock, M. and S. Barrett. 1986. "Elderly Victims of Family Abuse, Neglect, and Maltreatment: Can Legal Assistance Help?."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9(3).
- Sengstock, M., and M. Hwalek. 1986. "Assessing the Probability of Elder Abuse: toward the

- Development of A Clinical Instrument."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5(2): 153-173.
- Shiferaw, B., M. B. Mittelmark, J. L. Wofford, P. Walls, and B. Rohrer. 1994. "The Investigation and Outcome of Reported Cases of Elder Abuse: the Forsyth County Aging Study." *The Gerontologist* 34(1): 123-125.
- Steinmetz, S. K. 1981. "Elder Abuse" *Aging* (Jan-Feb) pp.315-16.
- _____. 1990. "Elder Abuse: Myth and Reality." pp. 193-211. in *Family Relationship in Later Life*. edited by T. Brubaker. Newbury Park, CA: Sage Pub.
- Sodei, T. 1999. How to Prevent Elder Abuse Caused by the Heavy Burden of Family Caregiving. 99 서울국제노년학회 특별후원심포지움 '21세기 노인부양과 여성노인의 문제'.
- Talbott, M. M. 1990. "The Negative Sid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Widows and their Adult Children: the Mother's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0(5): 595-603.
- Tatara, T. 1996. *Elder Abuse: Questions and Answers-An Information Guide for Professional and Concerned Citizens*.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 Wolf, L. E. 1982. *Minnesota's American Indian Battered Woman: the Cycle of Oppression: A Cultural Awareness Training Manual for Non-Indian Professionals*. St. Paul, MN: St. Paul Indian Center.
- Wolf, R. S. 1996. "Understanding Elder Abuse and Neglect." *Aging* 367. Washington, DC: Administration on Aging,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_____. 1997. "Elder Abuse and Neglect: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30: 153-174.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3: 508-515.

A Comparative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Elder Abuse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 Elderlies and Community Elderlies

Park, Mi-Eun
(Hannam University)

This article investigates 230 public assistance recipient elderlies and 354 community elderlies in order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and influencing factors on elder abuse. It surveyed at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result from the research were 1) the degree of elder abuse is generally low, and the primary type of abuse is psychological abuse and neglect. The victims of abuse experienced psychological pain rather than physical pain. 2) the abuser are mainly in early forties, and very unstable economically. 3) ba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 and non-recipient elderlie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spondents' sex, age, education level, income, ADL, IADL, chronic disease,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number of friends. 4) the factors affecting elder abuse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 elderlies are depression, alcohol, social support(elderly-related factors), alcohol, childhood abuse(abuser-related factors), and emotional relationship, number of family members(family-related factors). And, the factors affecting elder abuse of community elderlies are childhood abuse, social support(elderly-related), relationship with victims (abuser-related), and emotional relationship(family-related). Finally, the research recommends that differential intervention strategies are needed in order to prevent elder abuse of the public assistance recipient elderlies and the community elderlies.

Key words: elder abuse, public assistance recipient elderlies, risk factors.

[접수일 2004. 2. 20 게재확정일 2004. 4. 20]